

반정 아이파크캐슬 청약 조건 check !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반정 아이파크 캐슬은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입니다.

▣ 1순위 청약 조건 Check

1_ 거주지 확인

화성 및 경기도 / 서울 / 인천 거주자 1순위 청약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 1순위 청약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 화성시 거주 : 해당지역 청약 접수 (2) 수도권 거주 : 기타지역 청약 접수 (경기도, 서울, 인천 거주자)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수도권)거주자로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과거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

- 국외거주 인정기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아래 예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 해외거주로 봄)
 - ※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해당지역 거주를 우선공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6항 제2호(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 183일 초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봄. 단,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
 -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와 청약자의 세대원 및 자녀 중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됨.

우선공급 신청 대상자(화성시 거주자)	우선공급 및 기타수도권 신청 불가한 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상자(단신여행, 출장, 파견 등)로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있는 대상으로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한 경우

※ 1순위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지역에서 마감되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는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6.23.)」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 (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화성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_ 연령 확인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세대주 청약신청 가능

만 19세 미만 청약신청 불가

3_ 세대주 확인

세대주 : 1순위 청약 가능

세대원 : 2순위 청약 가능

4_ 청약통장 기간 확인

24개월 이상 경과 : 1순위

24개월 미만 경과 : 2순위

5_ 청약통장 예치금 확인

구분	반정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59, 75, 84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59, 75, 84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56 제외 전 타입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전 타입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6_ 5년내 당첨사실 확인

당첨사실 없음(세대원 포함) : 1순위 가능

7_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자 및 1주택자 : 1순위 가능

2주택 이상 : 2순위 청약 가능

- (1) 주택이 없다(무주택자) : 가점제 공급 대상자
- (2) 주택이 있다(유주택자) : 추첨제 공급대상자 : ① 1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 / ② 2주택 이상 1순위 청약 불가(2순위 가능)
- ※ 주택(일부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간주) 소유 여부의 확인대상은 청약신청자 및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2년내 가점제 당첨사실 여부 등 선정기준 선택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공급대상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8_ 재당첨제한 확인

아래 4가지 중 - 모두 "아니오" 일 경우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신청 가능
 - 하나라도 "예" 가 있으면, 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통해 재당첨 제한기간 조회

- (1)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 (2)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 (3) 과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 (4) 과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
- ※ 상기 (1)(2)(3)(4) 항목의 확인 대상은 청약신청자 및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반정 아이파크 캐슬

일반공급(1·2순위) 청약 안내 [1]

□ 일반공급(1·2순위) 신청일정

신청 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1순위 (해당지역)	2020.11.17(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1순위 (기타지역)	2020.11.18(수) 08:00~17:30		
2순위	2020.11.19(목) 08:00~17:30		

□ 일반공급 청약 자격

구분	순위별 조건				
	거주지역	당첨사실 제한	재당첨 제한	주택소유	청약통장
1순위 (당해지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 (세대주만 가능)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전국)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원 포함)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당첨된 적이 없는 자 (세대원 포함) ※ '청약Home' 청약제한사항 확인	무주택자, 1주택자 * 무주택자 : 가점제 * 1주택자 : 추첨제 (청약 시, 주택 소유여부 선택에 따라 자동 분류)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예치)
1순위 (기타지역)	서울, 인천 및 기타경기도 지역 거주자 (세대주만 가능)				
2순위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 가능)	무관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당첨된 적이 없는 자 (세대원 포함)	무관	청약통장 가입자 (가입기간, 예치금 무관)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까지)				
재당첨 제한	• '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하여 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예비당첨자	• 각 타입별 일반공급물량의 3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 -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 (동일 점수 경쟁 시 추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해외 체류자 및 해외에 체류했던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체류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신청을 해야 하거나, 청약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로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2) 청약예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규모 변경 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② 청약저축 → 청약예금 통장 변경 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민영주택 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구분	반정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59, 75, 84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59, 75, 84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56 제외 전 타입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전 타입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반정 아이파크 캐슬

일반공급(1·2순위) 청약 안내 [2]

□ 청약 가점제 항목별 적용 기준

구분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함.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2)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 3) 무주택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② 단, 직계존속 1인이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예 : 청약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④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⑤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인정 불가. ⑥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 인정 불가. 4) 직계비속(자녀·손자녀) ①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②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③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제외. ④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 ※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유주택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만 18세)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양가족수 산정 시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53조 제 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시(기존주택 및 분양권 등) 부양가족수 미포함하여 산정함.(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반정 아이파크 캐슬 특별공급 청약 안내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일정

신청 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0.11.16(월) (인터넷 신청 ‘청약Home’: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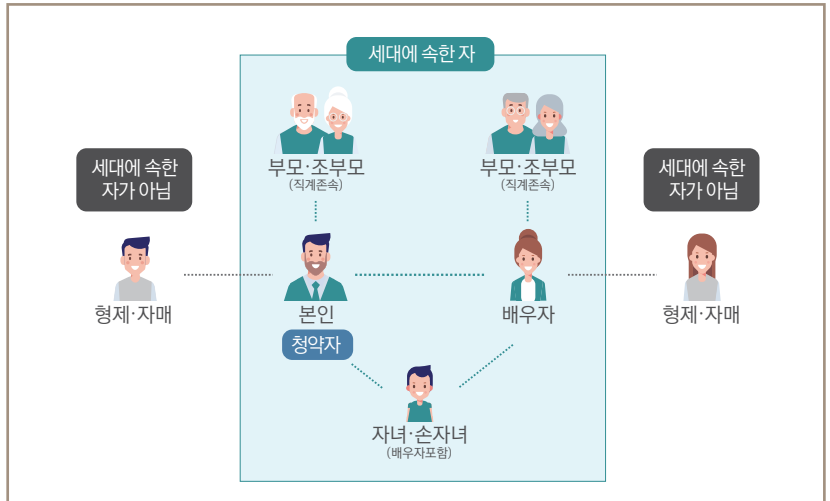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주거자격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세대원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세대원 포함) ※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여부도 포함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청약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청약통장 24개월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가능 면적(전용)	59, 75, 84㎡		59, 75, 84, 105㎡	59, 75, 84㎡	59, 75, 84, 105㎡
예비입주자	타입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동일한 세대구성원이 각각 중복 청약 신청(특공+특공) 할 경우 모두 부적격 됩니다. (※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 한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로 동일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 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추첨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 1호 이상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분양권 등도 주택소유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또는 청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이 무주택
 - ※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자녀)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도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에서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반정 아이파크캐슬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 ■ 특별공급 공통사항의 청약자격요건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
 - ※ 중소기업근로자,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추천기관
 - ① 장애인 : 수도권 거주지역 장애인복지과
 - ②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
 - ④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 협약서, 인터넷 청약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지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 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단,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일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일반)특별공급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제3자 대리인 (당첨자 겸수일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하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특수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반정 아이파크캐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갖추고,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공동사항의 청약자격요건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임신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소형저가 주택 등) 1호 또는 1세대를 제외한,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항목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이외 주택소유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 협약서, 인터넷 청약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승인(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의(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의확인서 발급 (단, 국가공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 지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파양양 직계 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용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부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볼(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볼)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거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일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일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제3자 대리인 (영청자검수 및 계약 시 본인 모두 제3자)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	재직증명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증빙서류) 아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 :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용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반정 아이파크캐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선정 방법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120% 이하 (본인,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공급 적용 (소수점 이하 절상)
선정방법	<p>〈아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각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른 우선공급 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세대수 75% 우선배분(소수점 이하 절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혼부부 우선공급 75% : 소득기준 10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 有 120% 이하) 2) 신혼부부 일반공급 25% : 소득기준 120% 이하 (신혼부부 모두 소득 有 130% 이하) 2. 신혼부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및 「민법」 제855조 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거주기간 우선요건을 충족한 자 (※ 화성시 거주자 우선) 나.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다.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30% 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 ~ 130% 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지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①,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 매출 기재된 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판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1)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포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류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람.(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은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기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반정 아이파크캐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자.
- 자격요건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내 속한 모든 세대원은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1순위를 충족하는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신청한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성년인 자(만 19세 이상) 전원)의 소득을 포함)이 [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자.
 ※ 가구원수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 특별공급 구비서류 (*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 협약서, 인터넷 청약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소유(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공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표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 지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 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복부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불(단,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거주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 1년 근로 / 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건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 존·비속을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재직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인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인증서류) ※ 다음 장 [표2] 소득증빙서류 및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서(건본주택 비치)	
제3차 대리인 (당첨자검수일 /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차)	○		위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행일 등 모두 포함되어 발급하시기 바람.(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반정 아이파크캐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소득 및 선정방법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선정 방법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 130% 이하 •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에 우선 / 단, 동일 지역내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선정방법	<p><아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소득 → 거주지역 → 추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세대수의100%를 소득기준 배분(소수점 이하 절상) 2. 경쟁이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 거주자(화성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화성시)거주자 우선 배분 2) 동일지역 거주자 내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배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성년자인(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21명)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포함되지 않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사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② 사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사무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② 사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사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 요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소득 증명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사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① 사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①, ② 사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내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 매출 기재된 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사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사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사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내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1)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제시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 요함.

반정 아이파크캐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태아나 입양아를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 **■ 특별공급 공동사항의 청약자격요건** [표1] 특별공급 대상 청약통장 구비여부 참조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① 임신의 경우 :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② 입양의 경우 :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점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됨.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별공급 구비서류 (*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 확인서, 인터넷 청약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승인(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공유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 지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 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용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근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불(단,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일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기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건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당첨자검수일/계약시(본인)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람.(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사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반정 아이파크캐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자격요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입주자처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소형·저가주택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매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특별공급 구비서류 (*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 확인서, 인터넷 청약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 지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 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불(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불)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불일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당첨자검수일/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람.(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특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